대법원 2017도15538 변호사법위반 사건 보도자료

대법원 공보관실(02-3480-1451)

대법원(주심 대법관 박상옥)은 피고인 이동찬의 변호사법위반 사건, 즉 "피고인이 ① 최유정 변호사와 공모하여 이숨투자자문의 송창수로부터 '인베스트컴퍼니' 사건 등의 수사·재판 관련 교제·청탁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합계 50억 원을 수수하고, ② 단독으로 2015. 3. 26. ~ 2015. 6. 1. 사이에 재판·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합계 3억 5,100만 원을 수수하였다"는 변호사법위반 사건에 대하여, ① 최유정 변호사와의 공모범행은 모두 유죄가 인정되고, ② 단독범행의 경우 합계 1억 4,400만 원 수수 부분만 유죄(나머지 수수부분은 이유무죄)가 인정되며, ③ 피고인으로부터 25억 원의 추징을 명한 원심의 판단에 공동정범·변호사법위반죄의 성립·추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(대법원 2017. 12. 22. 선고 2017도15538 판결)

1. 사안의 내용 및 소송 경과

가. 사안의 내용

■ 피고인은, ① 최유정 변호사와 공모하여 송창수로부터, ② 인베스트컴퍼니사건 재판부에 대한 교제·청탁명목으로 2015. 6. 26.경 현금 20억 원을 수수하고, ⑥ 인베스트컴퍼니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보석 관련 교제·청탁 명목으로 2015. 9. 2.경 현금 3억 원, 2015. 9. 7.경 현금 7억 원, 15. 9. 10.경 수표 10억 원 합계 20억 원 수수하고, ⑥ 이숨투자자문 수사 및 재판 관련 교제·청탁 명목으로 2015. 10. 30.경 현금 10억 원을 수수하고(합

계 50억 원 수수), ② 단독으로 2015. 3. 26. ~ 2015. 6. 1. 사이에 재판·수 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 탁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3억 5,100만 원을 수수한 사건임

나. 소송 경과

(1) 제1심

- 최유정 변호사와 공모한 변호사법위반죄(합계 50억 원 수수) ⇒ 모두 유 죄
- 피고인 단독의 변호사법위반죄 ⇒ 합계 1억 4,400만 원 부분만 유죄(나머지는 이유 무죄)
- 추징: 26억 3,400만 원
 - 최유정 변호사와 공모한 변호사법위반죄에서 수수액 50억 원 중 1/2¹)
 인 25억 원 + 단독의 변호사법위반죄에서 수수한 1억 4,400만 원 중
 1억 3,400만 원 부분 ⇒ 합계 26억 3,400만 원

(2) 원심

- 최유정 변호사와 공모한 변호사법위반죄(합계 50억 원 수수) 및 피고인 단독의 변호사법위반죄 중 합계 1억 4,400만 원 부분 ⇒ 제1심과 동일함 ⇒ 피고인과 검사의 이 부분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음
- 추징 : 파기, 25억 원
 - 최유정 변호사와 공모한 변호사법위반죄에서 수수액 50억 원 중 1/2인25억 원 추징 부분은 정당함
 - 그러나 피고인 단독범행(변호사법위반)의 경우, 현금 1억 원과 시계 (1,400만 원 상당) 및 현금 2,000만 원은 처음부터 최유정 변호사(현금 1억 원과 시계)와 강갑구(현금 2,000만 원)에게 귀속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, 실제로 이들에게 교부한 이상, 피고인이 불법한 이익을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는 없음 ⇒ 이 부분을 피고인

¹⁾ 공범 상호간의 진술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<u>그 공범 사이에 실제로 수수한 가액을 알 수 없을 때</u>에는 평등하게 추징할 수밖에 없음

으로부터 추징한 것은 잘못임

- (3)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 제기
- 피고인의 상고제기
 - <u>공동정범의 성립, 범죄사실의 증명의 정도, 변호사법위반죄의 성립 등</u> 에 <u>관한 법리오해, 각 금원의 수수와 관련한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</u> 진 주장
 - 피고인은 최유정 변호사와 공모하지 않았고, 증거가 부족함
 - 피고인이 송창수로부터 받은 금원은 50억 원이 아니라 32억 원이고, 그 수수목적도 교제, 청탁의 목적으로 받은 것이 아님
 -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주장
 - 최유정 변호사가 송창수로부터 수수한 금원을 피고인에게 분배한 사실이 없다고 신빙성 있는 증언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최유정 변호사와 평등 하게 추징을 선고한 것은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

■ 검사의 상고제기

● <u>원심이 이유무죄를 선고</u>한 <u>피고인 단독의 변호사법위반죄(2억 700만</u> <u>원 부분)도</u> 백승호의 신빙성 있는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, <u>유죄로 인정</u> <u>할 수 있음</u>

2. 대법원의 판단

- 사건의 쟁점
 - 피고인이 최유정 변호사와 공모하여 송창수로부터 '인베스트컴퍼니' 사건 등의 수사·재판 관련 교제·청탁 명목으로 합계 50억 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지(피고인 상고부분)
 - 피고인이 단독으로 2015. 3. 26. ~ 2015. 6. 1. 사이에 재판·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3억 5,1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지(쌍방 상고

부분)

-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액수가 25억 원인지(피고인 상고부분)
- 판결의 결과
 - 원심의 결론을 모두 수긍하여 쌍방 상고 기각
- 판단의 근거는 원심과 같음

3. 판결의 의의

-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이목을 끌었던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의 변호사법위반 사건의 관련 사건임
- 대법원은, 피고인이 ① 최유정 변호사와 공모하여 이숨투자자문의 송창수로부터 수사·재판 관련 교제·청탁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합계 50억 원을수수하고, ② 단독으로 2015. 3. 26.부터 2015. 6. 1.까지 재판·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억 4,4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원심을 확정하였음
- 또한 변호사법위반죄의 추징과 관련하여, 변호사가 형사사건의 피고인 등으로부터 담당 판사나 수사기관 등에 대한 교제 및 그들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공동 변호 명목으로 다른 변호사에게 지급한 경우, 당초 금품을 받을 당시 그와 같이 사용하기로 예정되어 있어서 그 받은 취지에 따라 그와 같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따라 사용한 것이라면, 이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취득한 재물의 소비방법에 불과하므로, 그 비용 상당액을 추징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명시적인판단을 하였음